

---

# 「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」 공모안내서

-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 -

---

2020. 3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

# 목 차

I.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.....	3
1. 사업목적 .....	3
2. 사업내용 .....	3
II. 공모 안내(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) .....	4
1. 지원부문 .....	4
2. 지원규모 .....	5
3. 지원대상 .....	5
4. 지원요건 .....	6
5. 지원내용 및 사업비 구성 .....	7
6.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.....	8
7. 제출서류 .....	9
III. 선정방안(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) .....	10
1. 평가방법 .....	10
IV. 신청방법 .....	12
1. 신청방법 및 접수안내 .....	12
2. 문의처 .....	12
V. 기타 .....	13
1. 유의사항 .....	13

# I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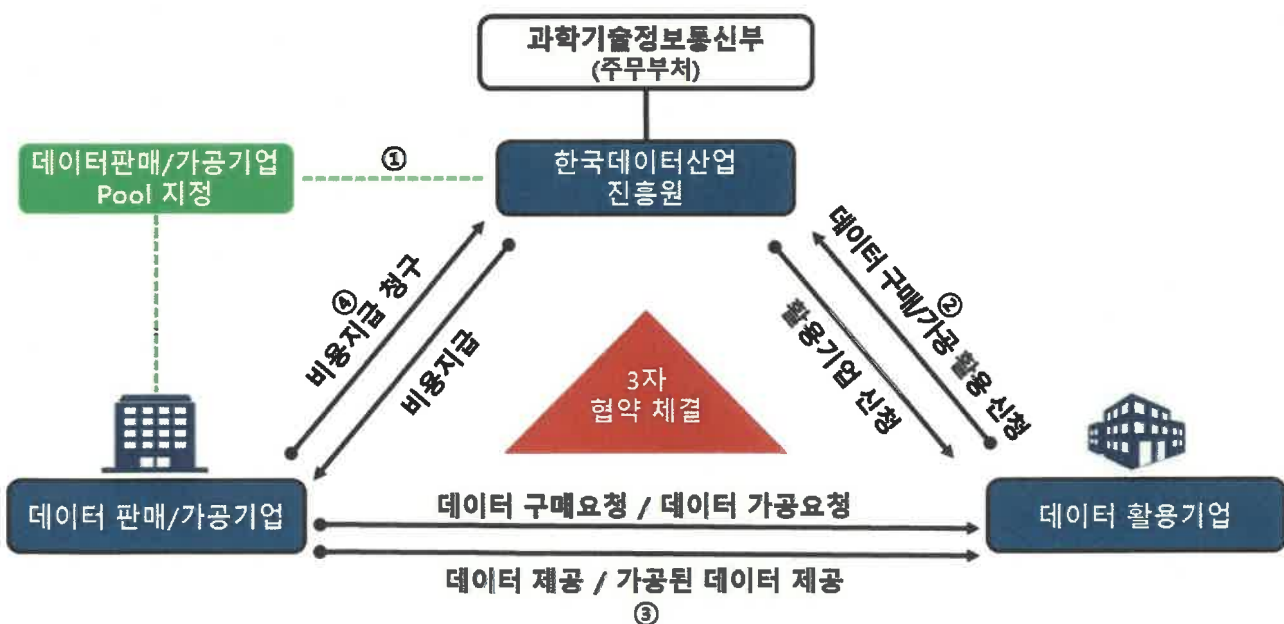
## 1. 사업목적

- 사회·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유통·활용 생태계 조성
-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의 촉매 역할 수행

## 2. 사업내용

- (사업개요)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,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< 사업 기본구조도 및 절차 >



- (추진방법) 데이터 및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고, 공모를 통해 데이터바우처 지원대상을 심사선정하여 지원
  - 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(이하 'Kdata')이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 판매기업 및 역량 있는 가공기업(이하 '제공기업')을 모집
  - ② 지원대상은 제공기업의 서비스 중 필요한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데이터바우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
  - ③ 선정된 지원대상과 협약(지원대상-제공기업-Kdata간 다자 협약) 후 제공기업은 지원대상에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제공

## II 공모 안내(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)

※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진단, 예방·관리, 치료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활용 및 가공이 필요한 기업·기관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바우처 공모 안내입니다.

### 1. 지원부문

- (데이터 구매) 데이터를 활용해 보건·의료분야 학술·정책 연구, 비즈니스 모델 개발,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
- (데이터 가공) ①AI 알고리즘을 적용한 혁신 서비스 및 제품 개발, ②빅데이터 분석·활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, 설계, 분류·클렌징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

※ 데이터 가공 사례(예시)

◆ **일반가공** : 정형화된 데이터(숫자, 텍스트 등)를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, 설계, 분류·클렌징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작업

\*raw data 구축→ data 설계 → data 분류 → data cleansing → big data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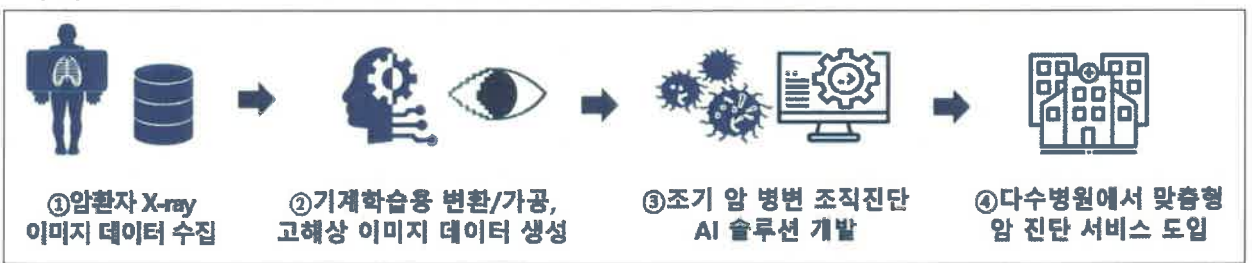
(예) 데이터(통신·교통) 가공을 통한 교통 취약지역 신규 교통서비스 출시



◆ **AI가공** : 정형·비정형(영상·이미지 등)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 최적의 AI모델 도출을 위해 단계별 검수와 테스트를 반복

\*raw data → data 설계 → data labeling(기계판독 및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) 및 data set 구축 → AI모델링 → 테스트 → 반복

(예) 의료데이터 기계학습 가공을 통한 맞춤형 암진단 서비스 도입



## 2. 지원규모

- 데이터 구매바우처 100건 내외(건당 최대 18백만원), 데이터 가공바우처 50건 내외(AI가공 7,000만원 이하, 일반가공 4,500만원 이하 지원)

\* '20년도 데이터 바우처 지원 건수는 총 1,420건이며, 이중 코로나19 과제 150건을 제외한 나머지 1,270건은 3.30일 별도 공고 예정

## 3. 지원대상

-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 치료제 또는 관련 서비스 개발 등에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국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, 1인 창조기업, 대학(연구팀) 및 연구기관\* 등

\* 대학·연구기관은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 지원 부문(50억원 내)에 한함

※ **데이터바우처 지원대상 범위**

▶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해당하는 기업\*

\*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

▶ 소상공인 :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라,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

▶ 1인 창조기업 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
▶ 공공기관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알리오)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

▶ 연구기관: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

▶ 대학연구팀: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

※ **제외대상** :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,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중인 기업,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,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

4. 지원요건

- 데이터바우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, 예방·치료 등과 관련된 데이터 기반의 제품·서비스 등의 산출물을 사업수행 결과로 제시해야 함

< 감염병 관련 활용 데이터 및 예상 산출물(참고) >

구분	활용데이터	예상 산출물
감염병 진단	▶유전자염기서열 데이터 ▶검사시약 데이터	▶COVID-19진단키트(C기업)
예방·관리	▶역학조사 관련 데이터(교통, 통신 및 웨어러블 수집 데이터) ▶기타 확진자 동선 및 활동지역, 방문장소, 감염차수, 감염경로 등	▶대유행 독감 툴킷(MIT, 감염·전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) ▶코로나 예측 데이터셋 개발 및 캐글등록 ▶코로나맵 개발 및 배포
치료	▶유전체데이터, 단백질 분자구조	▶치료제 개발

## 5. 지원내용 및 사업비 구성

지원부문 (지원건수)	지원 내용 및 사업비 구성	지원한도
데이터 구매 (100건 내외)	· 감염병 진단, 예방·관리, 치료 등과 관련된 학술·정책 연구,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보건·의료 목적의 데이터 활용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	건당 1,800만원
	· 구매바우처 1건 당 최대 18백만원을 지원하며, 18백만원 內 여러 종류의 데이터 구매 가능	
데이터 가공 (50건 내외)	· 감염병 진단, 예방·관리, 치료 등과 관련된 서비스·제품 개발 및 고도화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국민보건·의료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 및 가공 비용 지원	건당 4,500~ 7,000만원
	· 가공바우처 1건 당 최대 70백만원을 지원하며, 70백만원 內 데이터 수집, 설계, 전처리 등 다양한 가공서비스 이용 가능	

※ 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데이터 구매·가공서비스 활용에 대해 지원하나,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추가발굴·등록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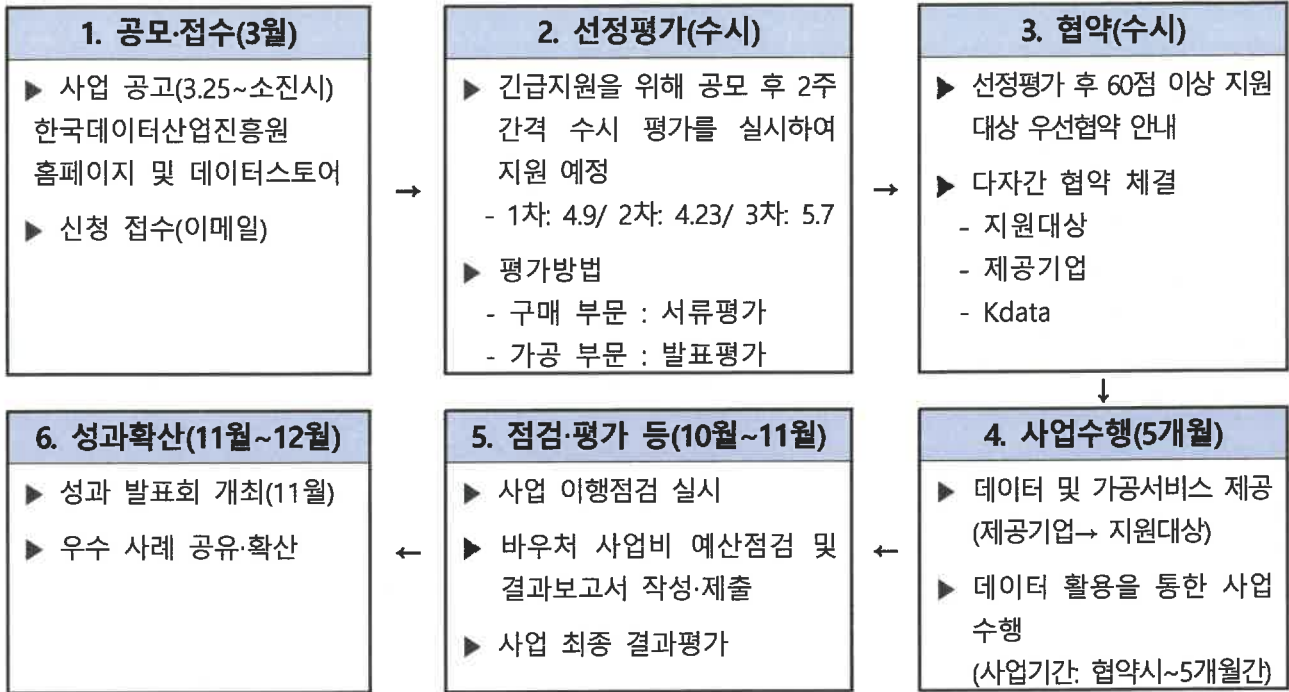
※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: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

구분	민간부담금(20%) 中 현금부담 내용
중소기업	· 민간부담금(20%) 중 현금(최소 4%) + 현물(16%) 구성
소상공인, 1인 창조기업	· 민간부담금(20%) 전체를 현물(인건비) 부담 가능
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	· 민간부담 해당없음

- ▶ 데이터바우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: 신청한 정부지원금이 총 1,800만원(80%)인 경우 민간부담금은 450만원(20%)에 해당 (총 사업비 : 2,250만원)
- 민간부담 시,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4%인 90만원은 현금으로 부담토록 하고, 소상공인·1인 창조기업은 자부담 전액 현물(인건비)로 부담 가능, 공공기관·대학은 자부담 제외

## 6.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

<'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절차>



※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 데이터바우처 신청 상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 또는 축소 등 변경될 수 있음

- (데이터 매칭)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지원대상은 공모접수 시 데이터 상품 또는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(제공기업)과 사전협의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

### - 사전협의 방법

<b>온라인</b>	- 지원대상이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판매·가공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직접 협의 ※ 데이터 제공기업의 세부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정보(데이터 포맷, 제공방식, 갱신주기, 활용조건, 가격정책 등), 담당자 연락처 등은 데이터스토어에서 확인 가능
<b>오프라인</b>	- 오프라인 설명회 및 매칭데이 행사 참석 * 행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(Kdata)이 주관하며 관련 세부사항과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* 코로나19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는 온라인 설명회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



## 7. 제출서류

-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접수기간 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마감 후 수정 및 반환되지 않음

No.	제출서류 목록		비고
	구매 바우처	가공 바우처	
1	데이터바우처 신청서		공모안내서 별첨
2	사업수행계획서	사업수행계획서, 발표자료 ※ 발표자료는 10분 이내 PPT(자유양식)	공모안내서 별첨 (발표양식 데이터스토어 참조)
3	데이터 구매 사전 협의서	데이터 가공 사전 협의서	공모안내서 별첨 (견적서 기업 자유양식)
4	데이터 상품견적서(매칭기업당)	데이터 가공견적서(매칭기업당)	
5	중소기업확인서 (중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 등 기업규모 확인용)	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
6	사업자등록증명원 (1인 창조기업 확인, 기업 정보 및 규모 등 확인용)		홈택스 및 정부24
7	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(해당시) (기업부설연구소, 연구전담부서 등 확인용)		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(www.md.or.kr)
8	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해당시) (1인 창조기업 확인, 기업 정보 및 규모 등 확인용)		대학연구팀 해당시 (해당 대학 별도 발행)
9	채무불이행 여부 확인 가능 서류 (예비진단 보고서, 신용체크 보고서 등)		국내 신용평가사 발급서류만 인정 (데이터스토어 공지사항 중 발급기관 참조)
10	국세 완납 증명서		홈택스 및 정부24
11	지방세 완납 증명서		

※ 데이터바우처 신청서 직인 날인 후 스캔본(pdf)과 원본 파일 첨부

※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류 발급은 데이터스토어 공지사항에 발급처 및 발급 상품을 확인하여 해당 신용평가사에 발급 신청(발급 시 약 3일 소요)

※ 발표자료는 가공지원분야만 해당되며, 선정평가 전 안내에 따라 10분 분량의 발표자료 제출(양식은 데이터스토어-알림판에 고시된 양식 준용하여 작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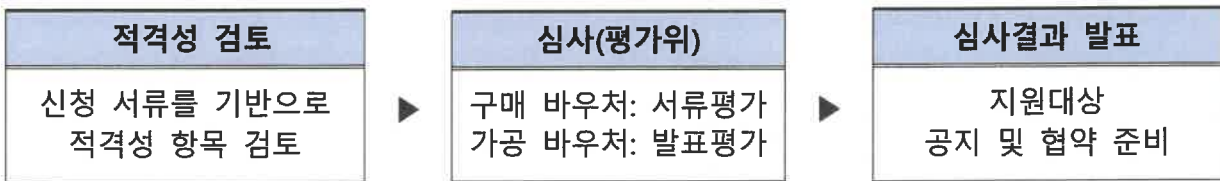
### III

## 신청방안(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)

### 1. 평가방법

- (평가절차)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**적격성 검토** 후,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지원대상 **심사** 절차에 따라 진행

#### < 평가 절차 >



- (적격성 검토)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지원대상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/부적격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결정

적격성 검토 항목
① 지원자격 - 1인 창조기업, 소상공인, 중소기업 : 중소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- 공공·연구기관(대학 및 대학연구팀 포함) : 사업자등록증명원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, 소속 재직·재학증명서 ② 채무불이행 여부 : 국내 신용평가사 발급 서류 ③ 제공기업 지정 현황 : 매칭된 제공기업의 지정 현황 검토 ※ 제공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④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 - 부정당사업체, 휴업 중인 기업, 세금체납 기업 확인

- (평가위원회 심사)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, 데이터 활용 계획, 핵심 역량, 실현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으로 평가
- 의료 및 의료분야 전문가, 데이터 활용·유통·기술·비즈니스 전문가, 법률·특허전문가 등 총 5~7인으로 구성

- 사업수행계획을 기반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평가 방식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름
- **(평가방법)** 구매부문은 '서류평가', 가공부문은 '발표평가\*'로 진행하며 최소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, 고득점 기업부터 바우처 우선 지원
  - \* 발표는 총 20분 이내(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)이며, 발표자는 반드시 실무책임자 또는 바우처지원대상의 대표자만 가능
  - \*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화상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,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(상세 내용 추후 공지)
- **(평가기준)**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및 계획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 및 파급 효과 등을 평가

<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>

평가항목	세부항목 및 배점기준
목표의 타당성 (10점)	○ 지원 목적과 바우처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(10)
추진계획의 적절성 (10점)	○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(10)
핵심역량 수준 (20점)	○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역량 수준(20) - 참여 인력의 이력 및 전문성 - 기술력, 특허 및 지식재산 등 보유기술 수준 - 비즈니스·연구의 독창성 및 특장점
데이터 활용 및 중요성 (30점)	○ 추진과제에 있어 데이터의 역할 및 중요성(10) ○ 데이터 활용 계획의 적절성(10) ○ 데이터의 거래조건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(10)
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(30점)	○ 실제 서비스 적용 및 사업화 실현가능성(15) ○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및 파급효과(15)

- **(이의신청)** 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## 1. 신청방법 및 접수안내

- 접수기간 : 2020년 3월 25일(수) ~ 소진 시까지
- 접수방법
  -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 이메일([datavoucher@kdata.or.kr](mailto:datavoucher@kdata.or.kr)) 로구비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접수

## 2. 문의처

- 문의 : 대표번호(1833-2246) / 게시판  
(<https://www.datastore.or.kr/support/qna/list>)

※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, 선정·평가, 매칭 등으로 구분하여 상담 지원

### ○ 온라인 안내

- 가공기업 확인 :  
<https://www.datastore.or.kr/voucher/manufactureList>

- 판매기업 상품 확인 :  
<https://www.datastore.or.kr/voucher/salesProductList>

-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발급처 확인 :  
<https://www.datastore.or.kr/voucher/notice/detail?id=12>

※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는 상기 게시물에서 관련 서류 발급처를 확인하고 발급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1종을 선택하여 발급 후 제출

- 가공바우처 부문 발표자료 양식 확인 :

<https://www.datastore.or.kr/support/notice/detail?id=2095>

## V 기타

### 1. 유의사항

-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, 제출자료 누락,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기관에 있으며,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
- 제출한 증빙자료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
- 작성된 신청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정부 출연사업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바우처지원대상이 제공기업과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,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, 차기사업 참여 제한,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 고발 진행
- 본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·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데이터를 판매·제공하는 기업·기관에 있음
- 세부사업 계획, 제공기업과 매칭, 집행 및 점검, 결과 검수 등의 사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‘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’에 따름
- 기타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, ‘ICT기금사업 관리지침’이 정하는 바에 따름
- 전화번호,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오류(누락)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·기관에게 있음
- 협약 전 제공기업이 지정 취소 또는 부정당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해당 제공기업과 매칭된 바우처지원대상은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